

개정 예고문

물품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0. 16.

대한체육회장

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('23.12.) 사항 반영 등

2. 주요내용

- 동일한 물품에 대한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
-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강화 기준 마련
-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

3. 의견제출

- 이 물품관리규정의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안(신구조문 대비표 포함) 1부. 끝.